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명칭 :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4.07.0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07.0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9일(금)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다빈도 문의사항]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다빈도 문의사항]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12.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 개인인 일반투자자

▣ 숙려기간이란?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입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① 투자자는 가입하고 숙려기간(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입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취소해서 자금반환.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이 적을 수 있고,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07.03)

DB 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 SEK-104 호[ELS-파생형] (펀드코드: ED259)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ELS-파생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기초자산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존속기간	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간**
모집기간	**청약철회권 적용 고객**: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5일(월) **청약철회권 미적용 동의 고객**: 2024년 07월 16일(화) ~ 2024년 07월 19일(금)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펀드설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종가 (현지시간 기준)**

집합투자기구 조기(만기) 상환평가일 및 상환금 지급일

회차	조기(만기)상환평가일	펀드 상환금 지급일
1	2025년 01월 22일(수)	2025년 01월 27일(월)
2	2025년 07월 23일(수)	2025년 07월 28일(월)
3	2026년 01월 21일(수)	2026년 01월 26일(월)
4	2026년 07월 22일(수)	2026년 07월 27일(월)
5	2027년 01월 21일(목)	2027년 01월 26일(화)
6	2027년 07월 21일(수)	2027년 07월 26일(월)

	수익구조	(1)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도래하는 각 회차별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 [주1]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75%(30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2) ***가드플러스 조건충족** 시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가드플러스 조건] ①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8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8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②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3)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3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6.80%(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4)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3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최종 하락률로 원금손실** 주) 1. 최초기준지수: 최초기준지수결정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2. 손실금액 계산방법 = 원금 * (만기상환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지수-1) 3. 상기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 기준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만기 원금손실 상환의 경우 : -35%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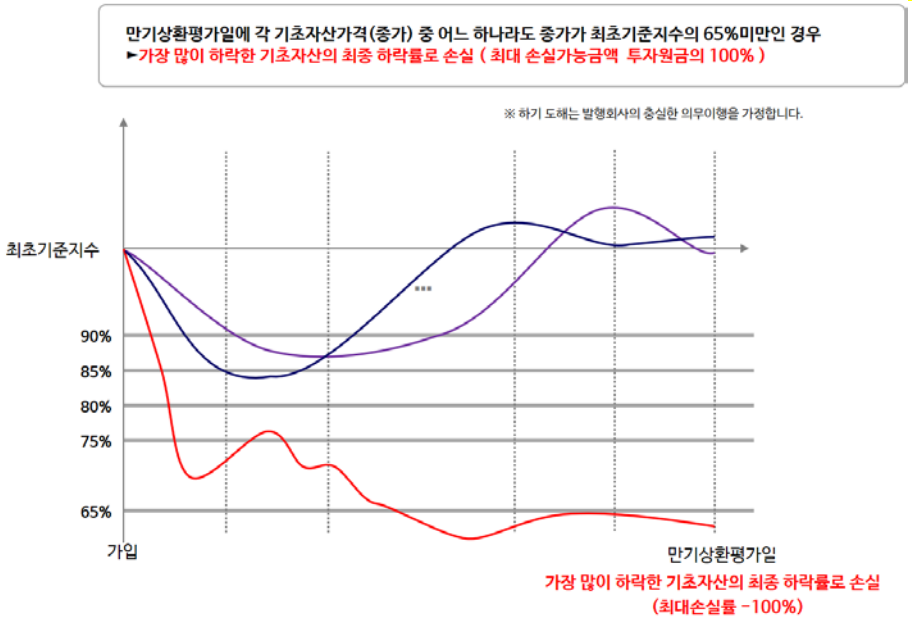
	발행회사	**신한투자증권 AA(2024.06.11), 유안타증권 AA-(2024.03.25),** **한화투자증권 AA-(2024.06.14), 메리츠증권 AA-(2024.06.13)**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o,- 순으로 구분됩니다) • 신용평가 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부도, 파산 등)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종류 A-E 수익증권(온라인 판매전용)과 종류 A 수익증권간의 선취판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상환수익률(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투자원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추가납입불가능),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는 숙려기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구분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0.75%이내	최초 6개월	0.285	0.0	0.94	0.295	90	91	92
		6개월경과후	0.003	0.0		0.01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60%이내	최초 6개월	0.285	0.0	0.52	0.295	75	76	77
		6개월경과후	0.003	0.0		0.013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신규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파생형(파생결합증권)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홍은표	1976	책임(본부장)	70	6,537	10.60	23.42	10.64	23.43	16 년 2 개월
김지혜	1986	부책임(팀장)			10.60	23.42			5 년 2 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전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 개인인 일반투자자
- 숙려기간이란?: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입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①투자자는 가입하고 숙려기간(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②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입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취소해서

<table>
<tr><td></td><td>자금반환
▪ [목표시장] 동 펀드는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지식과 경험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으로, 투자원금의 20% 이상 100% 이하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며, 투자기간이 파생결합증권의 최대 만기(3년 이상)까지 가능한 위험선호적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펀드에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전략] 동 펀드는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공모형 집합투자기구(ELF)입니다.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과 비대면채널인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빈도 문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빈도 문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관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td><td>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제2부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를 참고하십시오.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td><td>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손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환매대금 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td><td>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 또는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중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td></tr>
<tr><td>계약조건 변경위험과 강제조기청산위험</td><td>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td></tr>
</table>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방법</td><td>▪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매입청구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 해당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td></tr>
</table>

<table>
<tr><td>환매방법</td><td>▪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
▪ 기초자산의 가격이 발표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거래소 교란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환매가격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 환매가격 결정 및 환매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보유한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환매수수료</td><td>▪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환매청구시: 환매금액의 7%
▪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 청구시 : 환매금액의 5%
※ 중도환매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td></tr>
<tr><td>기준가</td><td><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td></tr>
<tr><td>모집기간</td><td>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9일(금)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4.07.07</td><td>존속기간</td><td>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간</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다만,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상환금 입금일의 2 영업일 이내로 합니다.</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인터넷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ED2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D260
수수료선취-온라인(A-E)	ED26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예정금액

1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최초설정시 1 좌당 1 원)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 31 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규약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5 억원)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9일(금)

청약철회권 적용 고객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5일(월)
청약철회권 미적용 동의 고객	2024년 07월 16일(화) ~ 2024년 07월 19일(금)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 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주1)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결과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ED2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D260
수수료선취-온라인(A-E)	ED26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내용
2024.07.26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간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상환금 입금일의 2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1층(대표전화 :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4.06.19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홍은표	1976	책임 (본부장)	16년 2개월	-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본부장(현직) - 한국채권평가 - LS자산운용 운용역
김지혜	1986	부책임 (팀장)	5년 2개월	-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_주식파생형(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홍은표	1976	책임 (본부장)	70	6,537	10.60	23.42	10.64	23.43
김지혜	1986	부책임 (팀장)			10.60	23.42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

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선취수수료-오프라인(A)		선취수수료-온라인(A-E)	
가입자격	제한없음		인터넷가입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5%이내		납입금액의 0.60%이내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환매청구시 : 환매금액의 7%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 청구시 : 환매금액의 5%			
투자신탁 보수(연, %)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
최초 6 개월	0.245	0.00	0.03	0.01
6 개월 경과 후	0.001	0.00	0.001	0.001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인터넷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ELS-파생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①	파생결합증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실한도가 파생결합증권 매입비용으로 한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다. 다음과 같은 수익구조를 가질 것 (1)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도래하는 각 회차별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 [주1)]의 **90%(6 개월), 90%(12 개월), 85%(18 개월), 85%(24 개월), 75%(30 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2) ***가드플러스 조건충족** 시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가드플러스 조건] ① 1 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 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8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8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② 2 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3)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36 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6.80%(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4)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36 개월)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최종 하락률로 원금손실** 주) 1. 최초기준지수: 최초기준지수결정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2. 손실금액 계산방법 = 원금 * (만기상환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지수-1) 3. 상기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 기준임
②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일정조건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특성상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파생결합증권의 주요 내용

기초자산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펀드설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종가 (현지시간 기준)
발행회사	신한투자증권 AA(2024.06.11), 유안타증권 AA-(2024.03.25), 한화투자증권 AA-(2024.06.14), 메리츠증권 AA-(2024.06.13)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o,- 순으로 구분됩니다) • 신용평가 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수익구조	(1)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도래하는 각 회차별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

두 최초기준지수 주1)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75%(30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6개월	1차가드 플러스	12개월	2차가드 플러스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2.80%	2.80%	5.60%	5.60%	8.40%	11.20%	14.00%	16.80%

* 상기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 기준임

(2) ***가드플러스 조건충족** 시 **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가드플러스 조건]
①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8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8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②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3)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3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6.80%(연 5.60%)수준**의 수익률로 상환

(4) 만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최종 하락률로 원금손실**

주) 1. 최초기준지수: 최초기준지수결정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2. 손실금액 계산방법 = 원금 * (만기상환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지수-1)
3. 상기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 기준임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부도, 파산 등)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종류 A-E 수익증권(온라인 판매전용)과 종류 A 수익증권간의 선취판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상환수익률(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투자원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 조기(만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 지급일

회차	조기(만기)상환평가일	펀드 상환금 지급일
1	2025 년 01 월 22 일(수)	2025 년 01 월 27 일(월)
2	2025 년 07 월 23 일(수)	2025 년 07 월 28 일(월)
3	2026 년 01 월 21 일(수)	2026 년 01 월 26 일(월)
4	2026 년 07 월 22 일(수)	2026 년 07 월 27 일(월)
5	2027 년 01 월 21 일(목)	2027 년 01 월 26 일(화)
6	2027 년 07 월 21 일(수)	2027 년 07 월 26 일(월)

주 1) 수익률(세전)은 예상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환매 수수료, 이자 지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2) 기준가격 결정일 및 조기 및 만기상환 평가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소 한 곳이라도 영업일이 아닌 경우,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결정일 및 평가일이 순연됩니다. 또한, 이 경우 평가일이 순연됨에 따라 펀드상환금 지급일도 순연됩니다.
주 3)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평가일 기준 3 영업일)이 신탁업자 및 해당 판매회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 펀드상환금 지급일도 순연됩니다.
주 4) 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3)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조정 등

기준주가 결정일, 조기(만기)상환평가일 등 기초자산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각 기초자산에 대한 기준주가 결정일, 조기(만기)상환평가일, 기준주가, 조기(만기)상환평가일 주가, 조기(만기) 상환일 또는 기타 지급일 등 투자신탁에 편입된 파생 결합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상관행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이에 우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 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

(나) 파생결합증권의 만기평가일(혹은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가격제공자(거래소 등)가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가를 공표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거래정지, 기세상한가 및 기세하한가 등)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다)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상환 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 사태가 발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한 위험 회피 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마)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4) 파생결합증권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관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거래상대방)를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4곳으로 나누어 투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거래상대방 별 파생결합증권 거래금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5) 과거 3년간 기초자산 가격 추이

*** S&P500 지수**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전체의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연도인 1941~1943년의 평균시가총액으로 나눈 뒤에 기준시의 지수(10)를 곱하는 시가총액방식으로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Poor's)사에서 가격산출합니다.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EUROSTOXX50 지수

EUROSTOXX50 지수는 유로존 국가(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상위 50개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되며 특정일의 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들의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일(1991년 12월 31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기준일의 지수는 1,000 입니다.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스톡스(STOXX Limited)사이고, 홈페이지(http://www.qontigo.com)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KOSPI200 지수

KOSPI200 지수는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 200개를 선정, 종합주가지수(KOSPI)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로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대상이 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 주가수준을 100으로 잡아 산출하므로 특정시점에서 200개 종목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에 비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됩니다. 연 1회 선물·옵션주가지수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심의를 거쳐 종목을 새로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나. 수익구조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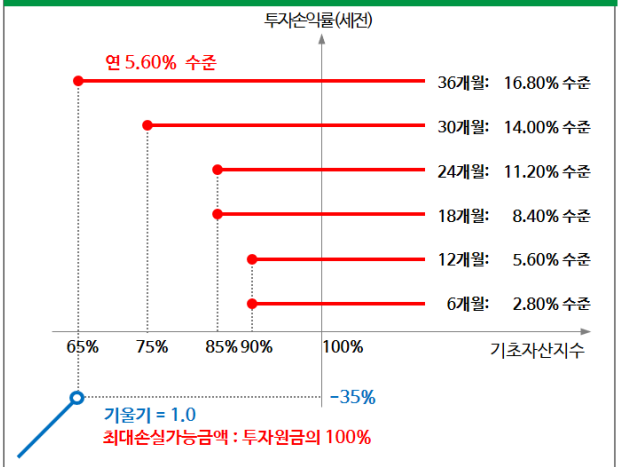

◆ 조기상환, 만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90%, 90%, 85%, 85%, 75%, 65% 이상인 경우**

○ **연 5.60%(세전) 수준 수익률로 상환**

◆ 만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65%미만인 경우**

○ **각 기초자산의 하락률 중 가장 큰 하락률 수준으로 손실 상환 (최대손실률 -100%)**

조기상환조건 미 충족시 가드플러스 상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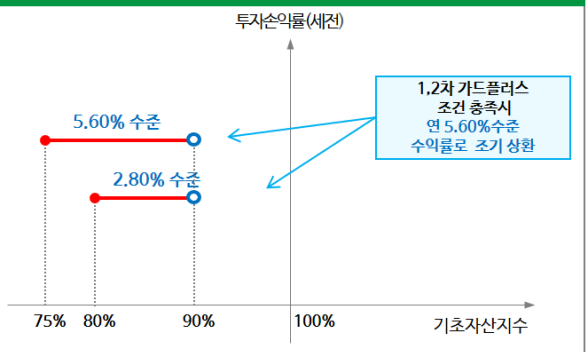

◆ **가드플러스 조건**

1)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90% 미만이고, 1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8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연 5.60% (세전)수준 수익률로 상환

2)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90% 미만이고,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연 5.60% (세전)수준 수익률로 상환

※ 상기 수익률은 선취수수료 차감 전 투자 원금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종류 A-E 수익증권(온라인 판매전용)과 종류 A 수익증권간의 선취판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상환수익률(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투자원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만기 원금손실 상환의 경우 원금손실률 : -35%~-100%]

만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미만인 경우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최종 하락률로 손실 (최대 손실가능금액 투자원금의 100%)

※ 하기 도해는 발행회사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가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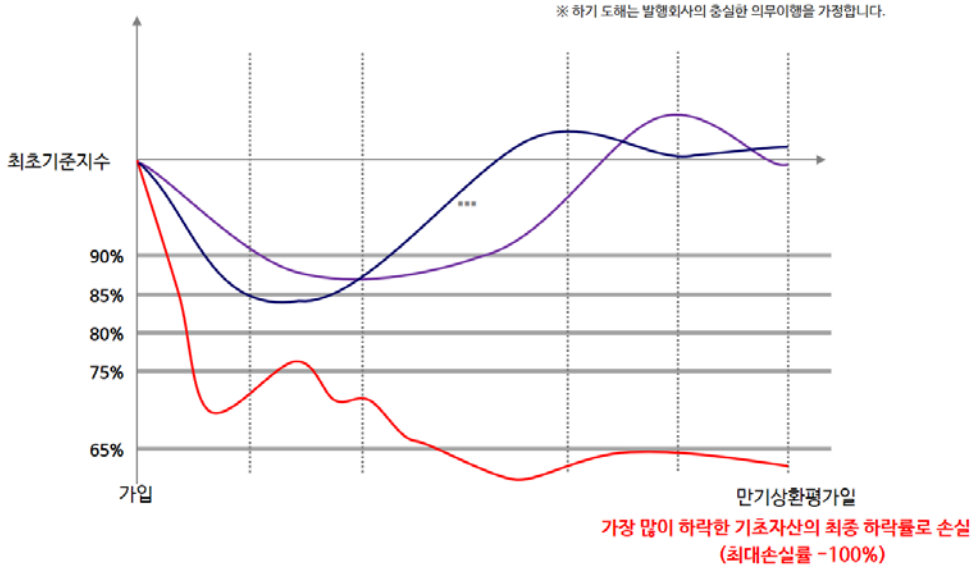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나 그 손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투자손익은 세금공제 전이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하는 상환금 등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얻어지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손익과 수익자가 지급받는 상환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중에 환매는 가능하나 환매할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에 따른 가격하락 및 고율의 환매수수료 등으로 원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1) 유동성 리스크 위험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 징구 등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조치계획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규약의 환매연기 및 상환금 지급 조항에 따라 처리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이나 일정 수준 이하로 신용등급 하락 시 판매사와 협의하여 투자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채무불이행 시에는 즉시 판매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투자 경험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고려하신 후에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 입니다.

가. 일반위험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관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은 자료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 징구 등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제2부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십시오.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소수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 집중 위험에 노출됩니다.
권리내용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증자, 감자, 주식소각 등 기초자산의 본질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손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위험과 강제조기청산위험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운용실적위험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 또는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중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진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투자원금 전액이 될 수 있으므로 6단계의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최고 수준인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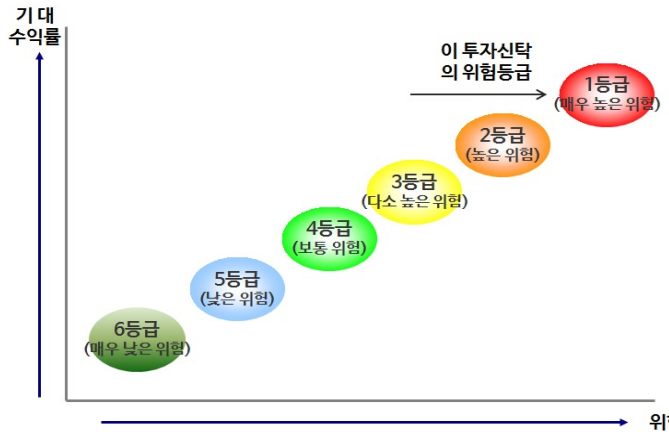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 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법 제 4 조제 7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 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VaR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 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60}$)를 곱해 산출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D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준투자권유준칙 'Ⅱ.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 31 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선취수수료-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선취수수료-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되며,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은 1,000 원(1 좌당 1 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 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5 영업일	6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이 발표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거래소 교란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환매가격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 환매가격 결정 및 환매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환매금액 기준 징수)	-6 개월 미만 환매 청구시 : 환매금액의 7% -6 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 청구시 : 환매금액의 5%	환매시 1 회

※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 해당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해당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 영업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4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 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 ·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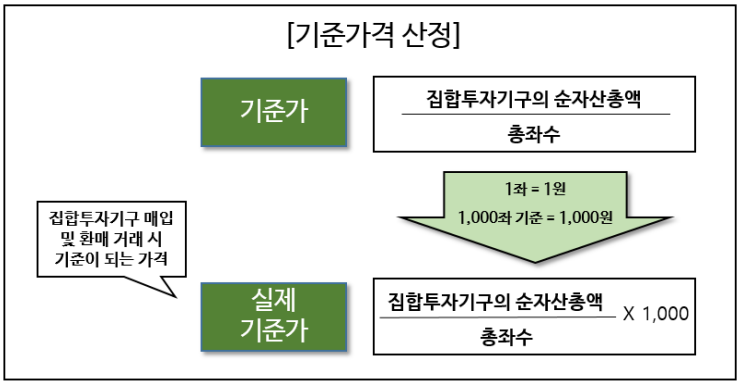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파생결합증권	두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사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선취수수료-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75%이내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환매청구시 : 환매금액의 7%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 청구시 : 환매금액의 5%	-
선취수수료-온라인(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60%이내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종류)	지급비율(연간, %)									
	기간	집합	판매	수탁	일반사무 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주1)	총 보수·비용 비율 TER주2)	동종유형 총보수 주3)	증권거래 비용주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개월까지	0.245	0.00	0.03	0.01	0.285	0.01	0.295	0.94	0.00
	6개월경과후	0.001	0.00	0.001	0.001	0.003	0.01	0.013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6개월까지	0.245	0.00	0.03	0.01	0.285	0.01	0.295	0.52	0.00
	6개월경과후	0.001	0.00	0.001	0.001	0.003	0.01	0.013		0.0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펀드는 신설펀드로서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비용관련 데이

터를 활용하여 기타비용을 추정하였으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4) 이 펀드는 신설펀드로서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비용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하였으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예시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선취수수료-오프라인(A)	90	91	92
선취수수료-온라인(A-E)	75	76	77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4)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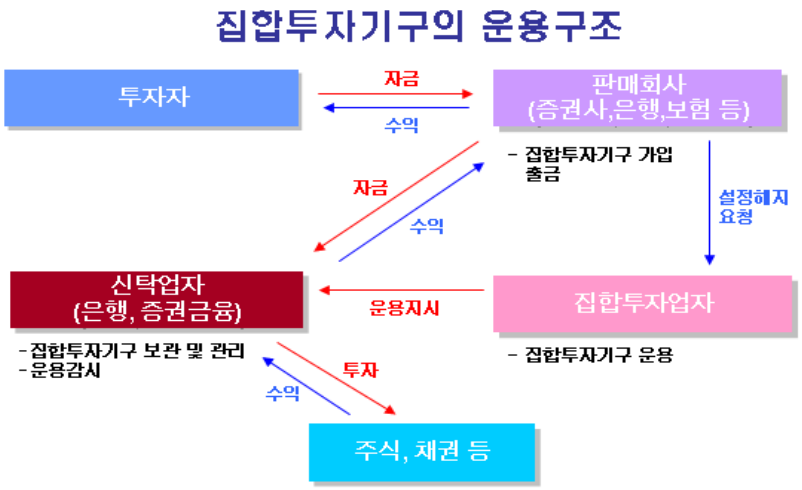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 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02-787-3700)	www.db-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28기 (2023.12.31)	27기 (2022.12.31)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778,157,470	14,521,832,537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62,376,717	4,532,455,154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7,584,982,363	4,187,960,000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7,200,000	417,200,000
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9,509,895,872	40,313,949,271
Ⅵ. 유 형 자 산	608,974,301	41,519,683
Ⅶ. 기타자산 외	5,772,930,745	1,877,210,169
자 산 총 계	70,634,517,468	65,892,126,814
Ⅰ. 기타부채	7,018,550,053	2,787,829,980
부 채 총 계	7,018,550,053	2,787,829,980
Ⅰ. 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1,602,507	-231,602,507
Ⅲ. 이 익 잉 여 금	33,847,569,922	33,335,899,341
자 본 총 계	63,615,967,415	63,104,296,83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0,634,517,468	65,892,126,814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28기 (2023.12.31)	27기 (2022.12.31)
Ⅰ. 영 업 수 익	19,271,843,019	19,029,156,556
Ⅱ. 영 업 비 용	17,933,480,556	17,162,104,550
Ⅲ. 영 업 이 익	1,338,362,463	1,867,052,006
Ⅳ. 영 업 외 수 익	551,950,710	1,437,463
Ⅴ. 영 업 외 비 용	866,430	476,843,31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89,446,743	1,391,646,159
Ⅶ. 법인세비용	477,776,162	424,941,127
Ⅷ. 당 기 순 이 익	1,411,670,581	966,705,032

라. 운용자산규모(2024.06.18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7,295	1,689	25,839	21,028	4,490	356	14,991	2,036	11,896	89,62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 2가) (T:02-3455-2114)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11 층(02-6714-4600)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파생결합증권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 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본 투자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46 조 및 4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숙려기간 : 개인인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입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을 부여합니다.

  투자자는 가입하고 숙려기간(2 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입일 불포함 3 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며,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취소해서 자금반환합니다.

  2) 청약철회권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 터 7 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5 년 이내여야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9)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금융투자업규정』제 7-1 조의 2 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파생결합증권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초자산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을 말합니다.
거래소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하며, “관련거래소”란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주요 거래소를 말합니다.
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
결산	신탁재산을 운용한 운용성과를 일정한 방법에 의거 계산하는 절차로 신탁계산기말이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좌수	수익증권의 매매단위. 수익증권 가격은 최초 설정 당시 1좌당 1원이지만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
과표기준가격	펀드투자자에게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따로 산출하는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지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6245(2024.07.03~2024.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97호(2023.12.08~2024.12.31)
D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702-1호(2024.07.02~2024.12.31)

매우 높은 위험 1 등급

요 약 설 명 서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 모집기간 : 청약철회권 적용고객 -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5일(월)
  청약철회권 미적용 동의고객 - 2024년 07월 16일(화) ~ 2024년 07월 19일(금)
- 설정일 : 2024년 07월 26일(금) •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 2024년 07월 26일(금) 종가
- 투자자 숙려기간 : 가입일(D) +2영업일까지 / 투자자 숙려 승낙콜 : 가입일(D) +3영업일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고객의 경우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손실가능 금액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여부	상품 만기
원금전액 손실	비 대 상	대 상	3년 만기

· DB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펀드 개요

펀드명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투자 형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모집기간	· 청약철회권 적용고객 - 2024년 07월 08일(월) ~ 2024년 07월 15일(월) · 청약철회권 미적용 동의고객 - 2024년 07월 16일(화) ~ 2024년 07월 19일(금)				
설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2024년 07월 26일(금) 종가		
운용 대상	파생결합증권 60% 이상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3년(매 6개월 시점에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상환)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발행사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용등급	AA	AA-	AA-	AA-
	기준일	2024.06.11	2024.03.25	2024.06.14	2024.06.13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행사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환매수수료	• 초기 6개월 미만 : 환매금액의 7% / 초기 6개월 이후 : 환매금액의 5% • 환매수수료는 전액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환매 방법	환매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기준가 적용, 5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 적용, 6영업일에 지급)				
선취판매수수료	• A 클래스 : 납입금액의 0.75%, • A-E 클래스 : 납입금액의 0.6%				

총 보수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초기 6개월	6개월 경과 후
	집합투자업자(DB자산운용) 신탁업자(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	연 0.245% 연 0.03% 연 0.01%	연 0.001% 연 0.001% 연 0.001%
	총보수	연 0.285%	연 0.003%
	합성총보수	연 0.295%	연 0.013%

2 투자자산 요약

수익률(조건 충족 시)	기초자산	수익구조
연 5.60% 수준 **(리자드 상환 시 연 5.60% 수준)** (투자원금기준, 세전) **조건 미달성시 원금손실** **(-35% ~ -100% 수준)**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KOSPI200 지수	90(80)-90(75)-85-85-75-65% NO KI (6개월단위 Step-down 조기상환형)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3 펀드손익구조

조기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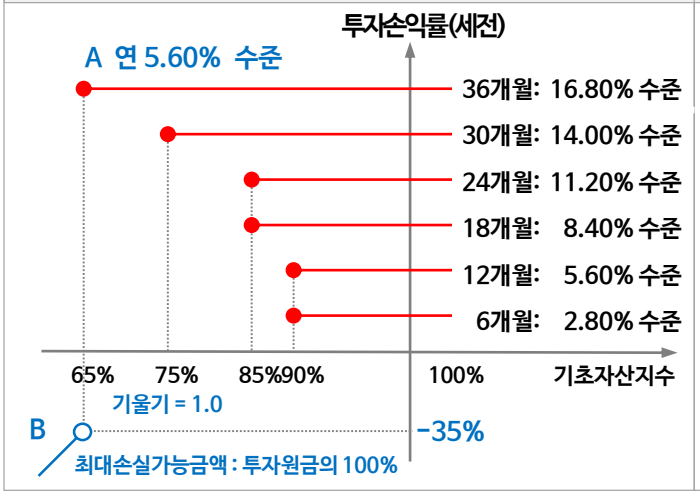

만기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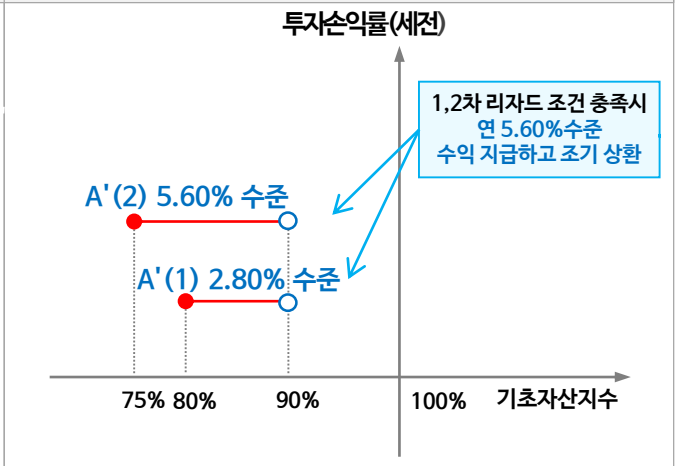

상환 구분	기간	배리어	상환조건	투자수익률(세전)
•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 모두 배리어 이상인 경우 → **수익 상환**				
조기 상환	6개월	90%	(1)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90% 이상** 인 경우	2.80% 수준
	6개월	80%	(1-1)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1) 조기상환을 충족하지 못하고, 1차 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80% 수준
	12개월	90%	(2)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90% 이상** 인 경우	5.60% 수준
	12개월	75%	(2-1)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2) 조기상환을 충족하지 못하고, 2차 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지수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5.60% 수준
	18개월	85%	(3) 3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85% 이상** 인 경우	8.40% 수준
	24개월	85%	(4) 4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85% 이상** 인 경우	11.20% 수준
	30개월	75%	(5) 5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75% 이상** 인 경우	14.00% 수준
만기 상환	36개월	65%	(6)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 이상** 인 경우	16.80% 수준
	36개월	65%	(7)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발생** **각 기초자산의 하락률 중 가장 큰 하락률 수준으로 손실 상환** **(최대 손실율 -100%)** **[손실금액 = 원금 * (만기상환평가지수 / 최초기준지수-1)]**	-35% ~ - 100% 수준

4 펀드 구조 및 평가 일정

·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 2024년 07월 26일(금) 종가

회차		평가일	상환일	수익률(세전)	비고
1	6개월	2025년 01월 22일(수)	2025년 01월 27일(월)	2.80% 수준	
2	12개월	2025년 07월 23일(수)	2025년 07월 28일(월)	5.60% 수준	
3	18개월	2026년 01월 21일(수)	2026년 01월 26일(월)	8.40% 수준	
4	24개월	2026년 07월 22일(수)	2026년 07월 27일(월)	11.20% 수준	
5	30개월	2027년 01월 21일(목)	2027년 01월 26일(화)	14.00% 수준	
만기	36개월	2027년 07월 21일(수)	2027년 07월 26일(월)	16.80% 수준	만기상환일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04호[ELS-파생형]

5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근거

• **설정근거 : 상품 수익구조, 손실 가능성 및 이용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

고객유형: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지식과 경험: 중간, 높음	손실감내능력: 원금 20% ~ 100% 이내
위험추구성향: 위험 선호적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중기(1년이상~3년미만), 장기(3년 이상)	투자가능기간: 중도환매가능, 만기 보유

6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 가정 : 1억원 투자시, 기초자산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 KOSPI200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400, 3000, 4000인 경우
• 만기상환금액 = 투자원금×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만기상환평가가격÷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100%

구분	상환조건	손실률	상환/손실 금액(투자원금 1억원 기준 예시)
사례1	만기평가일에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 KOSPI200지수의 가격이 각각 320(-20%), 2400(-20%), 2400(-40%)일 때 (더 많이 하락한 KOSPI200지수 기준)	-40%	• 상환금액 1억원 + (1억원 X -40%) = 6,000만원 • 손실금액 1억원 X 40% = 4,000만원
사례2	만기평가일에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 KOSPI200지수의 가격이 각각 320(-20%), 2400(-20%), 1200(-70%)일 때 (더 많이 하락한 KOSPI200지수 기준)	-70%	• 상환금액 1억원 + (1억원 X -70%) = 3,000만원 • 손실금액 1억원 X 70% = 7,000만원
사례3	만기평가일에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 KOSPI200지수의 가격이 각각 320(-20%), 2400(-20%), 0(-100%)일 때 (더 많이 하락한 KOSPI200지수 기준)	-100%	• 상환금액 1억원 + (1억원 X -100%) = 0 원 • 손실금액 1억원 X 100% = 1억원

7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기간이란?

- 적용대상자 : 개인인 일반투자자
-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청약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수신하시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우리은행 ARS로 청약승낙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의사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익영업일에 자동 해지되며, 해지된 자금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 본 제안서상의 예상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납입금액 기준 세전 수익률입니다.
•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잔존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환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부도, 파산 등)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 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청약의 권유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 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해당 상품에 대하여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DB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 및 상품 판매정보를 공유하고 확인 하였습니다.

판매회사 우리은행 운용회사 DB자산운용